



감정평가서 전자서명(원본) 증명서

《기본 정보》

감정서번호	SJ3-26-03-10
평가금액	218,844,000 원
평가기관 / 평가자	신진감정평가법인 경기지역본부 / 최장준
서명해쉬 페이지수	총 24 페이지

《서명자 정보》

구분	소속 / 성명	서명해쉬(일부)	서명시간
담당평가사	신진감정평가법인 경기지역본부 / 최장준	eyJhbGciOiJFUzI1Nils	2026-03-31 16:21:00.0
대표	신진감정평가법인 본사 / 이영훈	eyJhbGciOiJFUzI1Nils	2026-03-31 16:21:00.0
심사자	신진감정평가법인 본사 / 강현구	eyJhbGciOiJFUzI1Nils	2026-03-31 16:21:00.0

본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원본 감정평가서임을 확인합니다.

본 문서는 [전자서명법 제3조 2항]에 의거 우리 협회가 운영하는 감정평가서 전자서명 시스템으로 생성된 원본 감정평가서로, 문서의 무결성을 증명하며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본 문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산132-12 외 소재 물건(2025-11988-A01)

의뢰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감정평가서번호: SJ3-26-03-10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全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신진감정평가법인 경기지역본부



(토지)감정평가표

Page : 1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최 장 준

이 장 준

(주)신진감정평가법인 경기지역본부 대표 이영훈



(서명또는인)

감정평가액	이억일천팔백팔십사만사천원정 (₩218,844,000.-)				
의 회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감정평가 목 적	공매(국세, 지방세)		
제 출 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 유 자 (대상업체명)	주식회사케이원산업(2025-11988-A01)	감정평가 조 건	-		
목록표시 근 거	귀 제시목록 등	기준시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	2026.03.30	2026.03.26 ~ 2026.03.30	2026.03.31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토지	5,289	토지	5,289	- 218,844,000
	이	하	여	백	
합 계					₩218,844,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 사 자 : 감 정 평 가 사				

김 영 훈



(주)신진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소재하는 "장계저수지" 북서측에 위치하는 토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의뢰한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 대상 토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용도지역	개별공시지가 (2025.01.01)(원/㎡)	비고
1	죽산면 장계리	산 132-12	임야	1,983.0	농림지역	7,870	보전산지
2	죽산면 장계리	산 132-6	임야	3,306	계획관리	29,600	준보전산지

3.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6년 03월 30일임.

4. 실지 조사기간 및 내용

실지 조사 기간은 2026년 03월 26일 ~ 2026년 03월 30일이며, 2026년 03월 30일 현장 방문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 및 주위 토지의 이용 상황 등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함.

5.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1) 기준가치

본건 대상 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감정평가 조건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감정평가방법

(1)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 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 ①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업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제11조 각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 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 할 때에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 본건의 감정평가방법 적용

(1) 감정평가의 기준 및 방법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2) 토지의 평가

본 건 토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지역 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 추이 및 해당 토지의 주위 환경, 위치, 형상 등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과 인근 지가 수준을 종합 참작하여 평가하되, 거래사례를 통해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3) 기 타

1) 본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은 귀 제시 목록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대상 토지의 개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에 소재하는 “장계저수지” 북서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전, 답, 골프장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임야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도로 및 교통 환경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사정은 불편 시 됨.

3. 형상 및 이용상황

본건은 완경사지이며 사다리형으로 현재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4. 공법상 제한상황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임.

5. 기타참고사항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Ⅲ. 토지 감정평가액의 산출

1. 공시지가기준법

(1) 비교표준지 선정

(공시기준일 2026년 01월 01일)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접면 도로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A	죽산면 장계리 산108-7	10,016.0	임야	자연림	농림지역	맹지	부정형 급경사	5,880
B	죽산면 장계리 산114-6	1,080.0	임야	자연림	계획관리	세로(가)	사다리 완경사	23,300

선 정 이 유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이 동일·유사하고, 이용 상황 및 주위환경이 동일·유사하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 표준지를 선정함.

(2)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공시기준일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시점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으로 지가변동률에 의한 방법과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일반재화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전국적인 물가지수로서 당해 지역의 현실적인 지가변동 추이를 적정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시점수정치로 결정함.

[안성시 농림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비 고
2026-01-01 ~ 2026-02-28	0.055	2026년 02월 변동 누계분
2026-02-01 ~ 2026-02-28	0.107	2026년 02월 변동분
2026-01-01 ~ 2026-03-30	0.0170	1.00170배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안성시 계획관리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비 고
2026-01-01 ~ 2026-02-28	0.099	2026년 02월 변동 누계분
2026-02-01 ~ 2026-02-28	0.079	2026년 02월 변동분
2026-01-01 ~ 2026-03-30	0.00184	1.00184배

※ 작성시점 현재 2026년 03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이 고시되지 않아 2026년 02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

(3) 지역요인 비교

대상 토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 상호 대등함. (1.00)

SINJIN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개별요인 비교

1) 개별요인 비교항목

[임야지대]

조건	항목	세항목
가로조건	접근도로의 상태	접근도로의 배치, 폭, 구조 등
	임도의 상태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접근조건	인근 취락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인근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임목의 반출 용이성	임목 반출의 용이성 및 시장 접근성
환경조건	자연환경	일조, 통풍 등
		토양, 토질의 양부
획지조건	규모, 형상 등	면적
		방위
		형상
	고저, 표고 등	고저 (경사지 등)
		표고
		경사의 위치 및 굴곡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상황 등
	임상 등	임상, 조림, 자연림, 수종, 수령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및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고압선, 분묘 등)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개별요인 비교

토지 기호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누계
#1/ #A	1.00	1.10	1.15	1.20	1.00	1.00	1.518
	-접근조건: 본건은 표준지 대비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에서 우세함. -자연조건: 본건은 표준지 대비 자연환경 등에서 우세함. -획지조건: 본건은 형상 및 경사도 등에서 우세함.						
토지 기호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누계
#2/ #B	0.95	0.95	1.20	1.03	1.00	1.00	1.115
	-가로조건: 본건은 표준지 대비 접근도로의 상태 등에서 열세함. -접근조건: 본건은 표준지 대비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에서 열세함. -자연조건: 본건은 표준지 대비 자연환경 등에서 우세함. -획지조건: 본건은 형상 등에서 우세함.						

(5)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대법원 판례 1992누16300, 1993.09.10.)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인근 평가 선례 및 거래사례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이 필요함.

2)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정식

가격시점 당시 평가선례 기준 표준지 가격
 (거래사례×지가변동률×지역요인비교치×개별요인비교치)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가격시점 표준지 가격}}{\text{(비교표준지×지가변동률)}}$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인근 평가사례

[감정평가정보센터-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기호	소재지	지목	용도 지역	평가 목적	가격시점	단가(원/㎡)	사업명
가	죽산면 장계리 산135-15	임야	계획관리	담보	2024-01-12	51,000	-
나	죽산면 장계리 산114-5	임야	농림지역, 계획관리	공매	2025-06-20	41,000	-

4) 인근 거래사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정보체계-한국부동산원]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 지역	거래일자	거래금액	단가 (원/㎡)	비고
다	죽산면 칠장리 산82-6	임야	6,645.0	농림지역	2024-10-02	140,000,000	21,068	토지만 거래
라	죽산면 장계리 산112-1	임야	1,983.0	농림지역	2023-12-18	30,000,000	15,129	토지만 거래
마	죽산면 장계리 산113-2	임야	496.0	계획관리	2024-09-04	22,000,000	44,355	토지만 거래

5)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정

① 사례의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실무기준]

810.5.6.6 그 밖의 요인 보정

- ① 그 밖의 요인 보정은 [610-1.5.2.5]에 따른다.
- ②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할 때에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가격의 변동은 보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대상 토지의 인근 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이하 “인근지역 등”이라 한다)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나 보상사례(이하 이 조에서 “거래사례 등”이라 한다)를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밖의 요인 보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거래사례 등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4호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가격의 변동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이 같거나 비슷할 것
 2. 실제 이용 상황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3.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4. [810-5.6.3]에 따른 적용공시지가의 선택기준에 적합할 것

그 밖의 요인 보정사례는 용도지역, 실제 이용 상황 및 주위환경 등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래사례 기호#라 (비교표준지#A) 및 기호#가(비교표준지#B)를 선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② 사정보정

거래사례는 인근 지역의 시세 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않음. (1.00)

③ 시점수정

[지가변동률, 안정시]

사례	기간	지가변동률(%)	용도지역	비 고
#라	2023-12-18 ~ 2026-03-30	3.668(1.03668)	농림지역	표준지#A
#가	2024-01-12 ~ 2026-03-30	3.485(1.03485)	계획관리	표준지#B

④ 지역요인 비교치 산정

거래사례는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상호 대등함.(1.00)

⑤ 개별요인 비교

토지기호	가로조건	접근조건	자연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누계
표준지#A/ 사례#라	0.95	1.00	1.00	0.98	1.00	1.00	0.931

-가로조건: 표준지는 사례대비 접근 도로의 상태 등에서 열세함.

-획지조건: 표준지는 사례대비 형상 등에서 열세함.

토지기호	가로조건	접근조건	자연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누계
표준지#B/ 거래사례#가	1.00	1.00	0.90	1.00	1.00	1.00	0.900

-자연조건: 표준지는 사례대비 자연환경 등에서 열세함.

⑥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기 호	구 분	비교사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격차율
표준지 #A	사례#라 기준 표준지가격	15,219	1.00	1.03668	1.00	0.931	14,689	2.494
	구 분	표준지 공시지가	시점수정				산출단가 (원/㎡)	
	표준지가격	5,880	1.00170				5,89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기 호	구 분	비교사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격차율
표준지 #B	사례#가 기준 표준지가격	51,000	1.03485	1.00	0.900	47,500	2.035
	구 분	표준지 공시지가	시점수정			산출단가 (원/㎡)	
	표준지가격	23,300	1.00184			23,343	

⑦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수준, 평가 선례, 거래사례 및 장래 동향, 평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용할 보정률은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는바, 아래와 같이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였음.

표준지	산정 보정치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A	2.494	2.49
#B	2.035	2.03

(6)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토지 단가

일련 번호	소재지	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죽산면 장계리 산132-12	5,880	1.00170	1.00	1.518	2.49	22,263	22,000
2	죽산면 장계리 산132-6	23,300	1.00184	1.00	1.115	2.03	52,835	53,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

(1) 사례의 선정

1) 거래사례 선정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 지역	거래일자	거래금액	단가 (원/㎡)	비고
다	죽산면 칠장리 산82-6	임야	6,645.0	농림 지역	2024-10-02	140,000,000	21,068	토지만 거래
마	죽산면 장계리 산113-2	임야	496.0	계획 관리	2024-09-04	22,000,000	44,355	토지만 거래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 상황 및 주위환경이 동일·유사하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래사례 #다(토지
기호#1),#마(토지기호#2)를 선정하였음.

(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반영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에 정
통하지 않은 등 수집된 거래사례의 가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절
한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함.

결정의견	본 거래사례는 인근 지역의 시세 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 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
사정 보정치	1.00

(3) 시점수정

[지가변동률(안성시)]

기간	지가변동률	사례	비고
2024-10-02 ~ 2026-03-30	1.01403	거래사례#다	농림지역
2024-09-04 ~ 2026-03-30	1.02098	거래사례#마	계획관리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지역요인 비교

대상 토지와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 상호 대등함. (1.00)

(5) 개별요인 비교

토지 기호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누계
#1/ 사례 #다	0.97	0.92	1.03	1.18	1.00	1.00	1.085
-가로조건: 본건은 사례 대비 접근도로의 상태 등에서 열세함. -접근조건: 본건은 사례 대비 교통시설과의 접근성에서 열세함. -자연조건: 본건은 사례 대비 자연 환경등에서 우세함. -획지조건: 본건은 사례대비 경사도 등에서 우세함.							
토지 기호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누계
#2/ 사례 #마	1.00	0.95	1.20	1.03	1.00	1.00	1.174
-접근조건: 본건은 사례 대비 교통시설과의 접근성에서 열세함. -자연조건: 본건은 사례 대비 자연 환경 등에서 우세함. -획지조건: 본건은 사례대비 형상 등에서 우세함.							

(6)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일련 번호	소재지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토지 #1	죽산면 장계리 산132-12	21,068	1.00	1.01403	1.00	1.085	23,179	23,000
토지 #2	죽산면 장계리 산132-6	44,355	1.00	1.02098	1.00	1.174	53,165	53,000

3. 토지단가 및 평가액의 결정

(1) 각 감정평가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조정을 통한 토지단가의 결정

기호	공시지가기준법 (원/㎡)	거래사례비교법 (원/㎡)
토지#1	22,000	23,000
토지#2	53,000	53,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토지단가의 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비교 검토한 결과,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감정평가 목적 등에 부합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토지 단가를 결정함.

기호	면적(m ²)	토지단가 (원/m ²)	비 고
토지#1	1,983.0	22,000	공시지가기준법 적용
토지#2	3,306.0	53,000	공시지가기준법 적용

IV. 대상 토지 감정 평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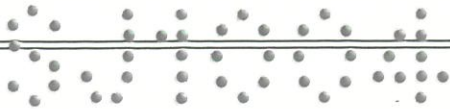
기호	면적(m ²)	토지단가 (원/m ²)	감정평가액 (원/m ²)
토지#1	1,983.0	22,000	43,626,000
토지#2	3,306.0	53,000	175,218,000
계			218,844,000

V.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상기 토지 감정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근거한 공시지가 기준법 및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를 거쳐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으며, 감정평가 목적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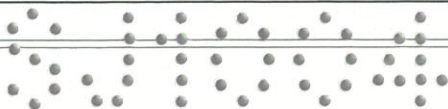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산132-12	임야	농림지역	1,983.0	1,983.0	22,000	43,626,000	
2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산132-6	임야	계획관리	3,306.0	3,306.0	53,000	175,218,000	
합 계								₩218,844,000.-	
				이 하 여 백					



광역위치도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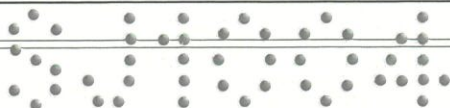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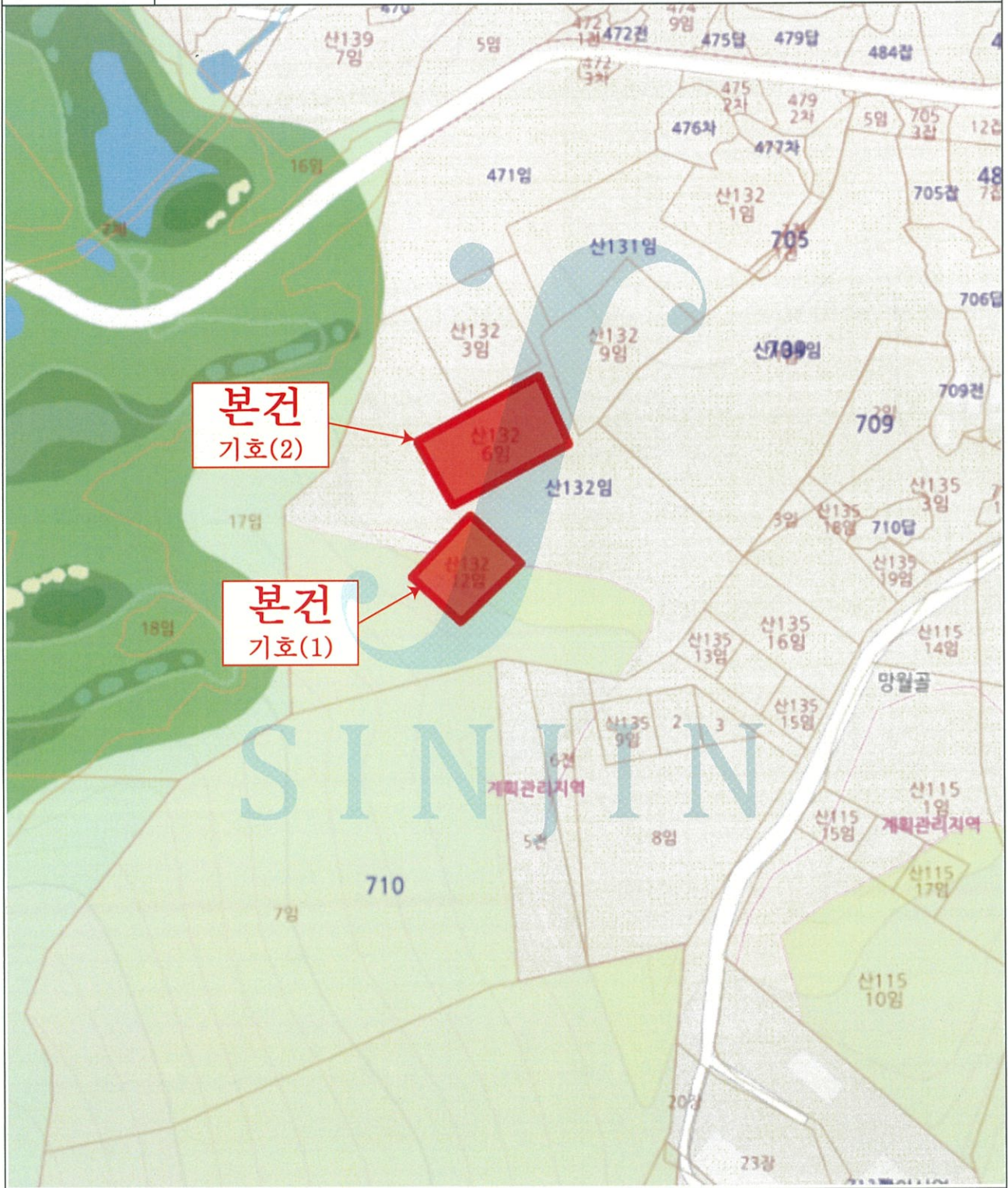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산132-12 외



상 세 위 치 도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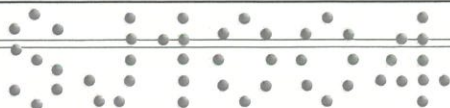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산132-12 외



상 세 위 치 도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산132-12 외



지 적 도



S = No Scale



범 례		평가대상토지		용도지역구분선		평가건물3층이상
		도로선		평가건물1층		평가제외건물
		도시계획선		평가건물2층		제시외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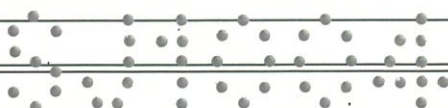
사 진 용 지



본건#1



주위환경



사 진 용 지



본건#2



주위환경

